

전자기기 및 동부품의 제조용부품 수입 추천 요령

한국전자공업진흥회 공고 제56호

제정: 1981. 7. 21.
개정: 1982. 2. 12.
개정: 1982. 7. 1.
개정: 1983. 7. 26.
개정: 1984. 7. 1.
개정: 1985. 7. 16.

상공부 고시 제85-19호(제한조치 품목의 수출입 요령) 제 2장(기계류 국산화를 위한 부품의 특례수입) 제 2-2조(대상품목 및 수입 대상자)에 의해 한국전자공업진흥회가 추천토록된 전자기기 및 동부품의 제조용부품 수입 추천(이하“부품수입” 추천이라 한다)은 다음 요령에 의하여 추천한다.

다 음

제 1 조(대상품목) “별표”

제 2 조(신청대상자) 전자공업진흥법 제 4 조(등록증)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공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수입 제조코자 하는 품목이 생산 품목으로 등록된 업체

제 3 조(신청서류)

1. 제조용부품 수입 추천서 5부. (별지 1호 서식)
2. 회로도 및 설계도면(신규 추천 신청서에 한함) 1부
3. 국내외 견적서(신규 추천 신청서에 한함) 1부.
4. 차기년도까지 소요부품(재료)국산화 추진 계획서(#양식 1) 5부.

제 4 조(제조용부품 수입 추천서 작성 요령)

1. 제조용부품 수입 추천서는 당해년도를 포함해 3년간의 계획을 명기해야 한다.
2. 국산화율의 산정은 국산부품 금액의 합을 전체 소요부품 금액의 합으로 나눈 것으로 한다.
3. 추천후 부품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최초 년도의 가격으로 국산화율을 산정하며 이때 제

조용 부품 수입 추천서는 변동된 가격을 기입하고 그 옆에 최초년도의 가격을 괄호 안으로 명기해야 한다.

4. 제조용부품 수입추천서는 부분품별로 가능한 세분화하여 작성해야 한다.

제 5 조(추천요령)

1. 제조용부품 수입추천서의 추천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본회내에 제조용부품 수입 추천 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용한다.
2. 제조용부품 수입 추천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 종합해 이를 추천한다.
 - (1) 장단기 제조용부품 국산화 추진계획 내용의 정확성
 - (2) 제조용부품 수입 추천서 내용의 정확성
 - (3) 제조용부품 수입 추천서상에 부품 조달 방법의 타당성
 - (4) 신청수량의 타당성

제 6 조(제조용부품 수입추천 유효기간)

1. 추천받은 제조용 부품 수입추천서 유효기간은 추천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제조용 부품 수입 추천서에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 (1) 국산화율을 낮게 책정해 단기간내에 국산화율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는 기기 또는 부품
 - (2) 개발에 소요기간이 짧은 기기 또는 부품
 - (3) 기타 1년 이내에 국산화율을 단계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기기 또는 부품

제 7 조(추천 내용의 일부 변경)

1. 추천 유효기간 이내에 신청, 추천된 양이 소진되어 그 양만을 추가코자 할 때에는 추가 신청량과 그 사유 및 수입실적서를 첨부해 본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때 추가 신청량은 기 추천된 제조용부품 수입 추천서 유효기간분에 한한다.
2. 추천받은 제조용부품 수입 추천서 중 다음 각호의 일부가 변경되었음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 내용과 사유를 명기해 본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때에는 기 추천된 제조용부품 수입 추천서 국산화계획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 (1) 가격의 일부변경

공지사항

(2) 규격의 일부변경

제 8 조(처리기간) 제조용부품 수입 추천서의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공휴일
- (2) 서류보완기간

제 9 조(수수료 징수)

1. 제조용부품 수입 추천서를 추천받은 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본 회에 납부해야 한다.
2. 수수료의 요율은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회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기타)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1. 이 요령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요령 시행전에 추천 신청분은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

CCCN	품 명	추천품목
8452	계산기, 화폐기, 금전등록기, 우편금계기, 표권발행기, 기타 이와 유사한 계산기구를 갖춘 기계	전 품 목
8454	등사기, 주조인쇄기, 화폐분류기, 화폐제수포장지, 연필질삭기, 천공기 및 지철기와 기타의 사무용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폐자동저불기 • 화폐자동예금저급기 • 화폐자동교환저급기
8458	우표, 연초, 초콜렛, 식료품, 기타 물품의 자동판매기(유희용의 것을 제외한다)	전 품 목
8459	따로 제기한 이외의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갖는 것에 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음파발생기 • 전자빔용용기기
8513	유선전화용 또는 무선전신용의 기기(반송용 통신기기를 포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식사설교환기 • 액시밀리 • 텔레프린터 • 반송장치 • 기 타
8515	무선전신용 또는 무선전화용의 송수신기기 및 라디오 방송용 또는 TV용의 송·수신기기(녹음기 또는 음성재생기를 갖춘 수신기를 포함한다)와 TV카메라, 항해용 무선기기, 레이다 및 무선 원격 조절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가입무선전화기 • M/W장비 • TV송신기 • TV중계기 • TV수상기 (폐쇄회로식 불포함) 와 방송청취용 라디오 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품목

CCCN	품 명	추천품목
8516	철도도로 또는 내륙수로의 교통관제용의 전기식기기 및 이와 유사한 항만용 또는 공항용의 전기식기기	전 품 목
8517	전기식의 벨, 사이렌, 표시반, 도난경보기, 화재경보기, 기타의 신호기(제8509호 또는 제8516의 것은 제외한다)	전 품 목
8522	따로 제기한 것 이외의 전기기기(고유한 기능을 갖는 것에 한한다)	• 신호발생기
9028	전기식기기(측정용, 검사용, 분석용 또는 자동조정용의 것에 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원방감시장치 • 전기적량의 측정용, 검사용기기(수출입 기별공고상의 한국 자동차공업협동조합 수입추천대상품목제외)
9211	축음기, 디케이팅머신, 기타의 녹음기 또는 음성재생기(레코드 플레이어와 테이프 맥을 포함하며 사운드레드의 유무를 불문한다) TV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 또는 재생기	• 녹화재생기
9213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제9211호에 해당 하는 기기용의 것에 한한다)	Tape Deck Mechanism

Computer 및 주변기기 제조용부품 수입계획 확인 업체

삼성 HP사에서는 합작선인 (미)HP사 제품인 HP-3000 System 37 16 bit Mini Computer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금년에 Board level 국산화를 계획하고 있으나 초기사업년도로 제조 및 Test기술이 아직 미흡한 단계로 소형컴퓨터에서 요구되는 신뢰도 및 기술성에 비추어 불 때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CRT, Terminal, Printer 등의 주변기기를 국산 대체함으로써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동인교역상사에서는 FDD5¼" Hot-Line을, 코스모스 컴퓨터는 IBM Compatible인 5¼" FDD를 국산화해 오고 있다.

대우전자에서 국산화하는 CPC-300, MSX 2nd Version Personal Computer는 3.5" FDD on MSX OS를 채택하고 있어 호환성이 뛰어나며 16bit PC 수준의 기능을 갖는 컴퓨터로서 시장전망이 매우 밝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상역컴퓨터에서는 MDS 2100 System인 8

공지사항

bit Intelligent Terminal을 IBM 3724, 3776, 8100 Terminal대체기종으로 사무자동화, Wordprocessor, EMS 및 다량의 Data처리에 적합한 System을 생산해오고 있다.

삼성전판의 N6390 V Banking Terminal은 (일) NEC모델로 접속가능한 Host는 UNIVAC이며 동사 모델인 S100/150과 연결·운영되는 금융단말기이다.

삼성전자에서는 과다한 업무량에 대처하기 위하여 고속이며 글자체가 섬세한 Printer를 국산화하게 되었으며 한국마이크로S/W개발에서는 24Pin Dot Printer를, 코스모전자는 9Pin 180 cps Dot Printer를 생산해 오고 있다.

동아무역의 NCR BAS 5000 Banking Terminal은 (미)NCR사 기종이며 접속가능 Host로는 IBM, NCR, CYBER로써 수입기종의 국산대체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7월중 국산화 확인된 업체는 다음과 같다.

업체명	품목	확인일자
삼성유펙트카드(주)	HP-3000 System-37 16bit Mini Computer OS : MPEV memory:0.5MB~2MB Terminal 최대접속 : 28대	85. 7. 2
동인교역상사	FDD (F-051M) 5¼" Hot line	85. 7. 9
코스모스컴퓨터	FDD 5¼" (0.5MB), IBM Compatible	85. 7. 9
대우전자(주)	MSX PC (CPC-300) 8bit PC Z80A CPU 64KB RAM, 48KB ROM, 3.5"FDD	85. 7. 10
한국상역컴퓨터	MDS 2100 System 8bit Intelligent Terminal	85. 7. 11
삼성전판	Banking Terminal (N6390V) 512KB, 8"FDD Terminal 최대접속 : 8 대	85. 7. 12
삼성전자(주)	Printer 24Pin, 200cps, 136Column	85. 7. 22
한국마이크로S/W개발(주)	Printer 24Pin, 120cps, 136Column	85. 7. 22
코스모전자	Dot Printer 9Pin, 180cps, 80Column	85. 7. 31

업체명	품목	확인일자
동아무역	NCR BAS 5000 Intelligent Banking Terminal i 8085 CPU	85. 7. 31

공업진흥청 전화번호 변경 안내

공업진흥청의 전화번호가 85년 7월 31일 24:00를 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관련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기 바란다.

- 교 환 : 503-7950~7959
- 당직실(야간) : 503-7951~7952
- 일반 전화

사무실명	전화번호	사무실명	전화번호
청 장 실	503-7900	품질관리국장	503-7906
	7901	품질관리과	7923
차 장 실	7902	소비자보호과	7924
	7903		7925
공보담당관	7910	등급관리과	7926
감사담당관	7911	안전관리과	7927
비상계획담당관	7912	표준국장	7907
총무과장	7909	표준계획과	7928
인사·서무	7913	계량표준과	7929
용도·경리	7914	화섬표준과	7930
문서	7915	기전표준과	7931
민원상담실	7916	재료표준과	7932
기획관리관	7904	정보센터·전산실	7933
기획예산담당관	7917	검사국장	7908
행정관리담당관	7918	검사행정과	7934
법무담당관	7919	기준조정과	7935
기술지도관	7905	소요량관리과	7936
화섬지도담당	7920	조사과	7937
기전지도담당	7921	연구관실	7938
재료지도담당	7922		

GATT의 기술장벽 통보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関税·貿易에 関한 一般協定) 第10. 4条에 의거, 스웨덴 통신공사(Swedish Telecommunications Administration)는 스웨덴의 teletex(CCCN 8453, 8451)에 연결되는 機器의 연결에 요하는 技術要件

을 발표하고 同 요건에 대한 자체의 의견을 1985. 9. 6까지 GATT를 통하여 접수하고 있다.

관심을 가진 업체는 본회 국제부(555-6187)로 문의하기 바란다.

시카고 상설전시관 신규 전시참가 업체 모집

본회 국제부에서는 국내의 중소전자부품업체의 대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하여 1983년 10월에 KOTRA의 시카고 무역관과 공동으로 시카고 전자제품 상설전시관을 운영하였는바, 1984년에는 약 100만弗, 1985년 7월 현재 약 400만弗의 수출계약 실적을 올렸으며 앞으로는 동 전시관을 국내 중소전자부품 생산업체들의 대미 진출 창구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신규 출품을 희망하는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문의처 : 본회 국제부(555-6187)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발족

本誌 4月号에 게재되었던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가 7/29에 정식 발족 및 본격적인 연구가 착수됐다.

同 연구소는 1차적으로 「아몰퍼스 실리콘의 전

연구과제	연구책임자	책임연구원
HEMT소자 개발과 특성조사	姜泰遠(동국대)	6
정전유도전계효과 트랜지스터(SIT) 제작 및 특성	洪鳳植(충남대)	4
멀티레이어 형성 연구	安哲(서강대)	3
X-ray lithography 가능성	李志華(서울대)	2
퍼스컴을 이용, VLSI CAD 기기개발	車均鉉(고려대)	5
PC이용, VLSI레이아웃에디터 및 모형회로개발	全洲植(서울대)	2
LPE 및 ALGaAs 접합과 발광특성	崔柄斗(서울대)	4
InP 및 관련복합반도체생장과 특성연구(I)	鄭重鉉(연세대)	3
아몰퍼스 실리콘의 전기적 광학적 특성연구	李晷漢(서울대)	5
광소자박막 및 II-VI족 반도체의 광학적 특성	張晉鉉(중앙대)	5
반도체 센서 개발연구	李德東(경북대)	3
MOSFET의 기초 연구	崔然益(아주대)	2
조셉슨 접합형성과 특성연구	金廷九(서울대)	3
반도체공동연구소의 최적운영체계 수립연구	高明三(서울대)	10

기적 광학적 특성 연구」를 포함하여 모두 14건의 반도체 공동연구 과제와 연구 과제별 연구책임자 및 책임연구원을 확정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검사감면운영요령개정(안)

공업진흥청고시 제85-884호

수출검사감면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1985. 7. 31
공업진흥청장

다 음

제2조 제1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외 유명규격을 획득한 물품(동규격을 당해 물품에 표시한 것에 한함)을 수출할 때.

가. 대상규격

1) CSA, JIS, BSI, BEAB, CB, UL, IEC Q, VDE, IWS

2) 기타공업진흥청장이 인정하는 규격

제2조 제2항의 제6호와 제5항을 삭제한다.

제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 2(검사의 제외)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할 수 있다.

1. 대상업체 : 3년이상 수출입업을 영위하고 전년도 수출실적이 50만弗 이상인 업체
2. 대상품목 : 섬유류, 신발류 및 잡화류
다만 품목분류는 수출검사지정물품 고시에 의함.
3. 요 건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상에 구매자의 검사조건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검사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
다만, 공인검사기관의 경우는 명시를 요하지 않는다.

1) 구매자(Buyer)

2) 구매자의 국내지사 또는 대리인으로서 수출물품 구매업자협회에 등록된 자.

공지사항

3) 국내공인 검사기관

4. 검사기준 : 구매자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름.
제11조 제 3 항 중 “제 6 호와”를 삭제한다.

제16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의 제 2 항을 제 3 항으로, 제 3 항을 제 4 항으로, 제 4 항을 제 5 항으로, 제 5 항을 제 6 항으로 한다.

② 공업진흥청장은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 2 조의 2 에 의한 검사를 제외를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정지시킬 수 있다.

1.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상의 구매자의 검사조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검사한 것으로 처리한 때.
2. 기타 검사의 제외요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부 칙

1. 이 고시는 198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출검사감면운영요령

1979. 7.	5	공업진흥청고시제 14757호전문개정
1980. 4. 17	"	제 80- 402호개정
1980. 10. 1	"	제 80-1475호개정
1980. 11. 5	"	제 80-1609호개정
1981. 7. 28	"	제 81-1162호개정
1981. 9. 23	"	제 81-1484호개정
1982. 12. 27	"	제 82-2601호전문개정
1983. 12. 31	"	제 83-1047호개정
1984. 2. 16	"	제 84- 31호개정
1984. 7. 25	"	제 84- 222호개정
1985. 5. 29	"	제 85- 352호개정
1985. 7. 31	"	제 85- 884호개정

제 1 조 (목적) 이 요령은 수출검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검사절차를 완화하거나 그 일부를 면제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검사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할 수 있다.

1. 무역거래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수출할 때.
2.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제품을 수출할 때.

다만, 외국수입업자의 요구에 따라 KS표시를

를 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KS규격에 의한 자체 검사성적서로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3. 해외에서 건설, 산림개발, 용역(무역업제외) 기타 투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그 종사자가 사용하는 별표 1 (일용품 및 공사용 자재)의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해당업체의 물품과 수량을 확인하여 수출할 때.

다만, 자사 및 계열업체 사업에 사용되는 분에 한하며, 품질로 인하여 법의 제재를 받은 업체의 제품은 제외한다.

4. 자동차 및 공작기계를 제조수출한 업체가 이미 수출한 자동차 및 공작기계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외판매대리점에 별표 2 (자동차 및 공작기계의 유지 보수용부분품)에 기재된 물품을 수출할 때.

5. 일반군수물자로서 국방부장관이 그 품질을 보증하는 경우, 다만, 그 범위와 방법은 공업진흥청장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6. 견본을 유상으로 수출할 때

7. 해외 유명규격을 획득한 물품(동규격을 당해 물품에 표시한 것에 한함)을 수출할 때.(85. 7. 31)

가. 대상규격

1) CSA, JIS, BSI, BEAB, CB, UL, IECQ VDE, IWS

2)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인정하는 규격

②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할 수 있다.

1. 삭제

2. 산업설비 수출촉진법에 의한 “산업설비”를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직접 또는 외국과의 합작으로 운영하는 백화점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물품을 수출할 때.

3. 외국인 투자공장이 그의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할 때.

다만,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가. 별표 3 에 의한 검사시설

나. 자체검사원

4.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외국상표 부착을 수출할 때.

가. 당해 상표부착품의 연간 수출실적이 5 천

만弗 이상일 것

나. 당해 상품부착품의 수출대상국이 3개국 이상일 것

다. 당해 상품부착품 수출업체가 별표3에 의한 검사시설을 확보하고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을 확보할 것

라. 당해 상품부착품 수출업체의 과거 1년간 불합격률이 동일품목의 평균 불합격률의 1/3미만일 것

5. 연간 300만弗이상 수출하는 업체로서 과거 1년간 6 회이상의 검사에 평균 불합격률이 1%미만일 때

③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관리 1 등급공장이 등급사정상품을 수출하는 때에는 제 2 항에 의거 검사면제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수출품에 사용된 원부자재가 KS표시품이거나 품질관리등급공장의 등급사정상품인 경우에는 해당 원부자재의 이화학검사를 생략한다.

제 2 조의 2 (검사의 제외)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할 수 있다. (85. 7. 31)

1. 대상업체 : 3년이상 수출입업을 영위하고 전년도 수출실적이 50만弗 이상인 업체

2. 대상품목 : 섬유류, 신발류 및 잡화류
다만, 품목분류는 수출검사지정물품 고시에 의함.

3. 요 건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상에 구매자의 검사조건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검사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
다만, 공인검사기관의 경우는 명시를 요하지 않는다.

- 1) 구매자(Buyer)
- 2) 구매자의 국내지사 또는 대리인으로서 수출물품 구매업자협회에 등록된 자.
- 3) 국내공인 검사기관

4. 검사기준 : 구매자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름.

제 3 조 (검사의 완화) 수출검사대상 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비한 경우에는 공업진흥청장의 허가를 얻어 해당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자체적으로 시행(이하 자체검사라한다)하여 수출할 수 있다.

1. 자체검사허가 신청일로부터 과거 6개월간 검사기관의 검사결과, 불합격률이 1.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별표 3에 의한 검사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또는 별표 3에 의한 검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생산업체와 검사시설의 사용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3. 자체검사사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 4 조 (자체검사허가신청) 제 3 조에 의한 자체검사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 1 호 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을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 7 조 제 1 항의 포장재 자체검사허가 신청은 한국잡화시험검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공장심사) ① 공업진흥청장은 제 4 조에 의한 신청이 제 3 조에 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심사일정을 미리 통보한 후공장품질관리등급제 운영요령 및 동심사요령에 의하여 공장심사를 실시하고 공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공장심사는 과거 6개월간의 관리기록 실적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 6 조 (자체검사허가) ① 공업진흥청장은 제 5 조에 의한 공장심사결과 그 평점이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자체검사를 허가한다.

② 공업진흥청장은 제 1 항에 의한 자체검사허가의 가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조 (자체검사허가의 특례) ① 수출포장용 종이 및 판지제의 용기(이하 골판지 상자라 한다) 와 동상자용 골판지를 생산하는 업체가 다음 조건을 구비한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얻어 자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별표 3에 의한 검사시설을 보유할 것
2. 공산품품질관리법 제 6 조 제 1 항에 동시행령 제 3 조에 의하여 사전검사에 합격한 라이나 및 골심지를 사용하여 제조할 것.
3. 자체검사원을 보유할 것.

② 제 6 조에 의한 자체검사허가공장 또는 제 3 조의 요건을 구비한 종합상사는 연간 총매출액의 50% 이상을 하청받아 납품하는 하청공장에 대하여 공업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 자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공장심사는 별표 4 의 하청공장 심사기준에 의하여 모기업 또는 공업진흥청장(본공장이 없는

공지사항

종합상사의 경우에 한함) 이 실시하며, 공장심사 결과 평점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③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관리 2등급공장이 등급 사정상품을 수출할 때에는 제3조에 의한 자체검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검사수수료의 감면) ① 자체검사허가를 받은 공장에 대하여는 검사수수료의 70%를 감면하며 검사수수료의 납부기한은 매익월 10일까지로 한다.

다만 환율의 적용은 당해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며, 분할 납부할 때에는 납부일의 환율을 적용한다.

② 수출품의 검사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칙(상공부령 제662호)에서 규정한 품질등급 중 1급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제 9 조 (검사원의 자격과 등록) ① 검사면제허가공장과 자체검사허가공장에서 고용하는 검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수출검사법시행령 제 1조 별표 1 및 2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해당업종의 생산 또는 품질관리업무에 3년(제 7조 제 1항 제 3호의 경우는 1년) 이상을 종사하고 해당검사기관 또는 한국공업표준협회에서 품질관리 및 검사업무에 관하여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자

② 제 1항에 의한 검사원은 해당 검사기관을 거쳐 공업진흥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10 조 (검사기준 및 방법) 자체검사허가공장은 상공부령이 정하는 수출품의 검사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11 조 (검사합격의 표시) ① 자체검사허가공장은 해당검사기관이 발급하는 합격증지를 교부받아 검사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전항에 의한 합격증지와 합격증서를 자체검사허가공장에 3개월 소요분 범위내에서 사전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 2조 제 2항 제 3호, 제 4호, 제 5호 및 제 3항에 의한 검사면제공장은 자체검사성적서로서 합격증을 갈음한다.

제 12 조 (서류의 비치) 자체검사허가공장은 자체검사 성적서와 품질관리관계서류를 포함한 제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 13 조 (수출품 및 원자재의 규격표시) 자체검사허가공장이 수출인증(허가)을 신청할 때에는 수출품 및 원자재의 규격(수출용원자재 기준소요량고시에 명시된 원자재규격 또는 원자재소요량 증명발급 기관에서 정한 규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14 조 (보고) ① 자체검사허가공장은 하청공장을 포함하여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15일 이내에 검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장의 이전
2. 공장의 양도 또는 합병
3. 2개월이상 생산중단 또는 개시
4. 생산시설의 변경
5. 대표자 또는 상호변경
6. 자체검사원의 이동 및 퇴직 등 변동사항

② 자체검사허가공장은 월간검사실적을 검사기관에 매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이 제 1항 및 제 2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5일 이내에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업진흥청장은 제 3항의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공장의 검사설비, 품질관리 및 공정관리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공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5 조 (사후관리) ① 검사기관은 자체검사허가공장(하청공장 포함)에 대하여 연 2회 공장심사기준에 의한 공장검사를 실시하고 당해 물품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별지 제 2호 서식에 따라 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업진흥청장은 전항의 규격에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면제공장과 자체검사허가공장에 대하여 허가요건의 위배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제 16 조 (처분) ① 공업진흥청장은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검사면제허가 또는 자체검사허가를 취소하거나 검사의 면제를 정지시킬 수 있다.

1. 면제 또는 허가요건을 위배했다고 인정할 때
2. 허위로 합격표시하거나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검사한 것으로 허위처리한 때
3. 검사면제허가물품 또는 자체검사물품 이외의

공지사항

물품을 이 요령에 의거 검사한 것으로 처리한 때

4. 제 2 항에 의한 효력정지처분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내에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물품의 품질에 대한 재검사결과 불합격되었을 때

② 공업진흥청장은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 2 조의 2 에 의한 검사의 제의를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정지시킬 수 있다. <85. 7. 31>

1.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상의 구매자의 검사조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검사한 것으로 처리한 때.

2. 기타 검사의 제외요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③ 공업진흥청장은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검사면제허가 또는 자체검사허가를 3 개월 이내의 범위내에서 효력 정지할 수 있다.

1. 당해물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불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합격한 때

2. 1 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때

3.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제15조에 의한 사후관리 결과 평점이 70점 미만인 때

④ 공업진흥청장은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경고할 수 있다.

1. 본 요령에 의한 각종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이 있을 때

⑤ 제 1 항에 의하여 취소된 공장은 취소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는 검사면제허가 또는 자체 검사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

⑥ 공업진흥청장은 제 3 항의 효력정지처분공장에 대하여는 처분기간만료 이전에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지적사항이 시정된 경우에는 동기간 만료일을 기하여 효력정지 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17조(적용제외) ①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한 등급사정 상품에 대하여는 제 4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조 단서의 규정은 예외로 한다.

② 제 7 조 제 3 항에 의한 등급사정공장에 대하여

는 제14조(제 2 항 제외), 제15조 1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82-2601)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시행일 이전에 검사면제 또는 자체검사 허가를 받은 업체는 이 고시에 의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동전) 본 요령 제 7 조 제 2 항의 규정은 1983.

1. 10부터 이를 폐지하며, 동조의 규정에 따라 자체검사허가를 받은 하청공장은 계속 본 요령에 의한 허가공장으로 본다. <개정83-1047>

부 칙 (84-31)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시행 이전에 검사면제 또는 자체검사허가를 받은 업체는 이 고시에 의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84-222)

1. 이 고시는 198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884)

1. 이 고시는 198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생략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보수교육 안내

공업진흥청에서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보수교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 실시를 안내하니 관련 자격취득자는 동교육에 불참하므로써 자격 정지 등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적극 참석하기 바란다.

1985년 7월 22일

공업진흥청장

공지사항

다 음

1. 근거
 - 국가기술자격법 제 4 조의 3 (83. 12. 20신설)
2. 목적
 -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새로운 기술보급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 실시함.
3. 시행시기
 - 1985년 7월부터 실시함.
4. 교육대상 종목 및 교육기관
 - 23개 교육기관에서 249종목을 대상으로 보수교육 실시함.
 - 교육대상종목 및 교육기관 : 생략
5. 교육시기
 - '75년부터 '78년까지 기술자격등록자 : '85. 12. 31까지 교육 이수해야함
 - '79년부터 '81년까지 기술자격등록자 : '86. 12. 31까지 교육 이수해야함
6. 교육 유예할 수 있는 경우
 - 해외취업, 군복무, 질병, 국외출장, 유학 및 연수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은 경우
 - 기타 보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7. 다른 법령에 의한 교육 인정
 - 기술자격취득자가 다른 법령(예 : 소방법, 전기공사업법 등)에 의한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보수교육으로 인정함.
8. 보수교육 이수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 기술자격취득자를 사용하는 자는 보수교육 이수를 이유로 보수교육 대상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음.
 - (국가기술자격법 제 4 조의 3)
9.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 갱신등록을 할 수 없으며 기술자격이 정지됨
 - 기술자격이 정지됨으로서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하여 취업, 보수(수당), 승진, 영업허가 등에 있어서 우대효과도 정지됨.
10.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청 품질관리과 (503-7923)로 연락하기 바란다.

버밍햄 반도체 전시회 안내

반도체 design, processing, assembly, testing 등에 관한 英國 최대의 반도체 관련 전시회 및 세미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관련 업체는 업무에 참고하기 바란다.

다 음

1. 일 시 : '85. 10. 1 ~ 3
2. 장 소 : 英國, 버밍햄, National Exhibition Centre
3. 전시품목 : 6" wafer생산 장비
VLSI Systems 등등
4. 세미나 일정

	10. 1	10. 2	10. 3
09: 30	1. Work Stations/ Computer Aids for VLSI Design	5. Photo-Imaging and Lithography	9. Automated Semiconductor Processing
12: 30	2. Semiconductor Materials	6. Semiconductor Metallising	10. In-Process Monitoring Testing
14: 30	3. Particulate Contamination	7. Energetic Beam Processing	
17: 30	4. Technology of Gallium Arsenide Devices	8. Packaging for Semiconductor Devices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한 영국대사관 (725-7341/3)으로 문의바람.

國際収支 改善方案 懸賞募集 案内

全國經濟人聯合會에서는 國際収支改善을 통한 外債減縮의 緊要性을 널리 인식시킴과 동시에 이에 대한 汎國民的 지혜를 結集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現實性있는 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懸賞公募를 실시하니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응모가 있기 바란다.

1985년 7월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장

공지사항

다 음

1. 募集部門: 1) 論文 2) 「아이디어」
2. 主 題: 國際收支改善方案(輸出增大, 輸入代替, 外貨節約, 貯蓄增大, 健全消費風土造成 등에 관한 內容)
3. 原稿枚數: 1) 論 文: 200字 原稿紙100枚 内外
2) 「아이디어»: 200字 原稿紙 30枚 内外
4. 募集期限: 1985年 9月 30日
5. 當選作發表: 1985年10月25日(個別通知)
6. 賞 金:

論 文	最優秀作(1篇): 賞牌 및 賞金 300만원
	優 秀 作(2篇): 賞牌 및 賞金 各 200만원
	佳 作(3篇): 賞牌 및 賞金 各 100만원
「아이디어」	奨 勵 賞(5篇): 賞牌 및 賞金 各 100만원

7. 審査方法: 斯界의 權威者로 구성된 審査委員會에서 審査
8. 留意事項: 1) 各 部門 共히 各者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題目을 붙일 것.
2) 「아이디어」部門의 경우, 다음 요령을 基準으로 작성할 것.
① 要旨(提案의 核心과 提案者가 강조하고 싶은 요점)
② 現況 및 問題點
③ 改善方案(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내용일 것)
④ 期待效果
⑤ 参考事項(기타 審査資料로 참고할 수 있는 사항)
3) 特定機關名이 인쇄된 원고지는 사용하지 말 것.
4) 表紙에 住所, 姓名, 連絡電話 番号, 職場 또는 學校名을 기입할 것.
5) 応募資格 및 1人당 応募篇數에는 제한없음.
6) 応募作品은 一切 返還하지 않음.

9. 보 낼 곳: 郵便番号 150-00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汝矣島洞
28-1
全國經濟人聯合會 經濟弘報事業部
電話: 782-3360(直)
783-0821~6(交) 341, 342

공매물품 응찰 안내

다음의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당관 보세 구역에 장치중에 있는 물품으로 장치기간이 경과되어 관세법 제122조에 의하여 공매코자 하니 관련 업체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입찰에 응하기 바란다.

공 매 공 고

(1985년 제 8 차)

장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물품은 관세법 제122조, 제124조 및 예산회계법 제70조, 동법시행령 제91조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매각하고자 공고함.

1985년 8월 일
부 산 세 관

다 음

1. 입찰에 부할 물품(소화기 제조기계 외 517건)
2. 매각방법: 일반경쟁입찰
3. 입찰일자는 85년 8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매 월요일마다 총 7회임.
4. 입찰 및 개찰장소: 부산세관 공매장소
5. 물품 공람 일시: 매회 입찰전일까지 매일 근무 시간내에 공람함. 공람하고자 하는 자는 당관 보세과에서 공람증을 교부받아 당해장치장에서 공람할 것.
6. 입찰보증금납부방법 및 장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을 매회입찰 10시 30분까지 징수과에 납부하고 동 영수증을 입찰서와 동봉하여 투합하여야 함.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세관 보세과(462-00 11/22)로 문의바람.

공지사항

〈구매목록〉

구매번호	제화번호	입찰일자	선명	B/L비호	품명	규격	수량	중량	화주	장치장	세액	매각조건	매각금액
24	5-1074	85.2.12	천지	YB85	치수측정기	각종	33pcs		한양상역	P# 1	3,341,581	수입	18,193,057
52	5-1218	85.3.11	천회호	YB-004	① 코 벡 터 ② 볼 트 ③ 팩 킹	GDM-B 3×37 GDM-3-7	320개 320 " 320 "		대성산업	P# 1 ~12	34,970	수입	187,742
76	84-149	83.11.20	1도남	HKBS 3B 8129	전공관용 소켓	JAPAN 단자 12개 No. 27236	17,000 pcs		SEOY YANG TRADING 조성근	국보영 수영	60,429,680	수입	246,367,180
80	85-3-3	84.11.22	K/Shipper	3012	Audio Cleaner ※ 전기형식승인 대상	BH-656	200ea		실화주 (경인무역) 창미실업	대환소 색	1,267,660	수입	2,553,910
81	85-5-1	85.1.25	MCHZER	HUBB-SNA-01	① Cable ② Carbon Brush	1604449002 2604321017	3,000개 6,000개		자원상사	세방 반여	980,440	수입	5,006,716
122	255-5-77	85.3.1	OMEX Pioneer	WO 2	Cassette Deck Mechanism with Motor	필립스 RT-65	160개		금성사	항구	522,240	수입	1,751,040
135	1249-4-122	84.4.8	Clover	TYLB-053	테이프 테크 메카니즘		28C/T	0.414 M/T	대진음향	고려 감만	9,883,320	수입	33,138,196
143	1249-5-105	85.3.3	칸나	JLYB-038	Relay (제전기)	①HL2-DC24V ②HL2-AC100V	200pcs 200pcs		우양전자	고려 감만	292,090	수입	1,190,866
152	1377-5-38	85.1.21	럭키스타	CCB-36	D.C Motor	Mubuch "Br" RE-260	5,000개		신명물산	국제 포위딩	1,053,030	수입	4,293,155
180-2	200-5-305	84.11.30	FERRY	061	① 중고공기압축기	PDR-370 S# 12-6081	1대		배봉현	구내	118,570	수입	434,770
179	200-5-230	84.11.15	천나	061	진공관부품 (고무제관)	φ10cm×1m φ15.5cm×1m	5E/A 5E/A		SEOUL VACUM Ind.	구내	118,570	수입	434,770

